

1. 개정이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신규로 구매 또는 임차해야 하는 제1종 저공해자동차의 의무비율을 상향하여 대기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대상 시설 중 도서 지역에 입지하는 경우 기상 악화 시 자가 측정의 예외를 인정하는 한편, 배출가스저감 전문정비사업자 교육기한을 현행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비율 조정(안 제79조의 15)

국가기관등의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의무비율을 현행 제1종 저공해자동차 8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상향함(안 제79조의15)

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 시험 기관 확대 및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교육기한 연장(안 제82조, 안 104조의2)

저감장치 등의 인증 시험 기관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도 대행하게 할 수 있게 하고, 현행 신규교육 기한을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

다. 자동차 온실가스 차이분의 이월 및 거래(안 제124조의5)

자동차 온실가스 차이분 이월 기간을 2020년까지 발생분은 3년으로, 2021년부터 발생분은 5년으로 함

라. 대기배출시설의 표준산소농도 적용, 자가측정 적용 예외 확대(별

표 8 비고, 별표 11 비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중 표준산소농도의 적용 예외를 현행 입자 형태 배출 물질에서 가스형태 배출 물질로까지 확대하고, 황산화물 자가측정 완화 대상에 현행 경유 등 연료유에서 가스를 포함하며, 섬 지역의 기상 악화로 인한 자가 측정 예외 근거를 신설함

마. 경유 철도차량 원동기 배출가스 인증 서식 마련(별지 제31호의3, 별지 제32호의3, 제33호의3 서식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본문 중 “별지 제31호서식 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을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1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1호의3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별지 제32호서식 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을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2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2호의3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33호서식 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을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3호의3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철도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철도차량의 형식승인 신청

제6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79조의15제1항 중 “이란”을 “이란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8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36호의7서식”을 각각 “별지 제36호의8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 제36호의8서식”을 “별지 제36호의9서식”으로 한다.

제82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시설, 장비, 인력 등 인증시험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기관에게 인증시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4조의2제1항제1호 중 “4개월”을 “6개월”로 한다.

제1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4조제2항”을 “법 제74조제2항 또는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검사합격증 사본(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재검사만 해당한다)

제124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4조의5(자동차 온실가스 차이분 이월 기간 및 초과분 상환 기간 등)
법 제76조의5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하고,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별표 3 제2호가목1)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같은 목 3)카) 중 “시·도지사”를 각각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별표 6의3 제1호 제3종 배출가스저감장치란 다음에 교체용 배출가스저감장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교체용 배출가스저감장치	법 제48조에 따른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제작자동차 배출가스	CVS-75
		보증기간의 50%	모드 또는 WMTC 모드

별표 6의3 제1호 비고 제1호 중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의”를 “배출가스저감장치(교체용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제외한다)를 부착한 자동

차의”로 하고, 같은 비교 제3호 중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대형승용차, 대형화물차, 초대형승용차 및 초대형화물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로 하며, 같은 비교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교체용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경우 자동차 제작자 저감장치 부착시의 오염물질 배출량의 0.85배에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의 0.4배를 더한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별표 8 제2호가목 비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배출허용기준란의 ()는 표준산소농도(O_2 의 백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에 대하여는 표준산소농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 폐가스소각시설 중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과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다만, 실측산소농도가 12퍼센트 미만인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은 표준산소농도를 적용한다.

나. 질소산화물(NO_2 로서)의 8), 9)에 해당하는 시설(시멘트 제조시설은 고로슬래그 시멘트 제조시설만 해당한다) 중 열풍을 이용하여 직접 건조하는 시설

다. 유리용해시설에서 공기 대신 순산소를 사용하는 시설

라. 구리제련시설의 건조로

마. 그 밖에 공정의 특성상 표준산소농도 적용이 불가능한 시설로서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

별표 8 제2호가목 비교 제9호 중 “시·도지사”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

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비고 제10호 중 “2023년 1월 1일”을 “2023년 9월 1일”로 한다.

별표 8 제2호나목 비고 제1호마목 및 같은 비고 제6호 중 “시·도지사”를 각각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비고 제7호 중 “2023년 1월 1일”을 “2023년 9월 1일”로 한다.

별표 8 제3호나목 중 “라목1), 2), 4) 및 5)”를 “라목1), 2), 4), 5) 및 6)”으로 한다.

별표 8 제3호라목2) 중 “시·도지사”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별표 11 중 “(제52조제3항 관련)”을 “(제52조제5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11 비고 제3호 중 “중유 등 연료유만을”을 “가스(액화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바이오가스에 한한다) 또는 중유 등 연료유를”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 지역에 위치한 배출 시설로서 해당 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이 기상 악화에 따른 장기 결항으로 자가측정이 어렵다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해당 측정주기의 자가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

별표 17 제6호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위 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철도차량 원동기에 적용한다.
2. 수입철도차량 원동기의 경우 NRSC 측정방법을 대신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측정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별표 22 제1호의 비고 제4호 중 “제83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운행차배출가스측정방법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다”로 하고, 제2호의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출장검사의 경우에는 검사기기 또는 계측기에 의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위 표에서 정한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의 방법 및 기준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별표 33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나. 첨가제 제조자가 제시한 최대의 비율로 첨가제를 자동차의 연료에 주입한 후 시험한 차량의 배출가스 측정치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이내여야 한다. 다만,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재검사 대상 첨가제에 대하여는 해당 첨가제가 최초 검사를 받은 첨가제의 성분 분석과 최대 첨가비율이 동일함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36 제2호다목3)의 근거법령란 중 “제2항·제3항”을 “제4항·제5항”으로 하고, 같은 목 4)의 위반사항란 및 근거법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또는 개 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5 항
--	----------------

별지 제1호서식 및 제1호의2서식 중 “제1조의6제2항” 및 “제1조의6제3항”을 각각 “제1조의7제2항” 및 “제1조의7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59조제1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제34조제2항”을 “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의3서식, 별지 제32호의3서식 및 별지 제33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36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4호의2서식 및 별지 제34호의3서식 중 “제67조의2제1항” “제67조의2제2항을 각각 “제67조의3제1항” 및 “제67조의3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의4서식 중 “제79조의4제1항”~~ 별지 제36호의5서식 “제79조의4제4항”을 ~~각각 “제79조의5제1항” 및 “제79조의5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의6서식 중 “제79조의9제1항”을 “제79조의11제1항”으로 하고, 별지 제36호의7서식 중 “제79조의17”을 “제79조의18”로 한다.

별지 제53호서식 중 “제74조제2항”을 “제74조제2항 · 제4항”으로 하고, 의뢰인(대표자) 제출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뢰인(대표자) 제출서류	1. 검사용 시료 2. 검사 시료의 화학물질 조성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성분분석서 1부 3. 최대첨가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첨가제 검사신청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제품의 공정도 1부(축매제 검사신청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검사합격증((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재검사만 해당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온실가스의 차이분 이월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25조의4의 개정 규정은 2021년도 판매실적에 의해 발생한 자동차 온실가스 차이분부터 적용한다.

인증번호(Certificate No.) :						
철도차량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서 (Certificate of [] Railway Rolling Stock Engine Emission)						
신청자	업체명(Company Name)			대표자 성명(Representative Name)		
	주소(Address)			전화번호(Tel)		
원동기제원 (Engine Specifications)	대표원동기형식 /원동기코드 (Type/code of parent engine)	원동기제작사(국) (Name of company & country)	원동기 배기량 (Engine Displacement)	최대출력 (Rated Power)	사용연료 (Fuel Type)	
제작사 설정내용 (Manufacturer's Setting)	배출가스표지판(Certificate Plate)					
	- 내용(Content) : - 부착 위치(Location of Affixing) :					
	장치적용조건 (Particular Conditions to be Respected in the Installation of the Engine on the Machinery)					
	- 최대부압(Maximum Allowable Intake Depression) : kPa - 최대배압(Maximum Allowable Back Pressure) : kPa					
배출가스 방지장치(Emission Control Device) 부착내용						
인증조건(Conditions of Certification)						
1.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른 검사 및 결함시정명령에 대비하여 원동기 구입에 대한 기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Keep thorough records pertaining to engine purchase in preparation for emission test pursuant to Article 50, 51, 52 and 53 of Clean Air Conservation Act.)						
2. 철도차량원동기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제성능을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정비지침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Take necessary measures, for example providing maintenance instructions to railway rolling engine owners, to maintain whole functions of emission control devices.)						
3. 「대기환경보전법」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This certification can be cancelled in case it corresponds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55 of Clean Air Conservation Act.)						
4. 배출가스적용기준 (Emission Limits)						
항목	CO	HC	NOx	HC+NOx	PM	Mode
배출가스적용기준(Emission Limits)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인증합니다. (We hereby grant a certification pursuant to Para. 1, Article 48 of Clean Air Conservation Act and Para. 1, Article 66 of its Enforcement Regulation.)						
년 월 일 (Year / Month / Date)						
국립환경과학원장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 Research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뒤쪽)

변경인증 (Extension of Cerification)		- 내용(일자) Content(Date) : - 철도차량 모델 추가, 변경 등은 제외 (Except for adding or changing vehicle models)					
패밀리 원동기 형식 (Type of Family Engine)		순번-형식(코드명)-출력 (No.-Type(Code)-Power)					
원동기 모델별 대상 철도차량 (Railway Rolling Stock[Vehicle] by engine type)							
원동기 형식명 (제작사) Engine type (Manufacturer)	원동기 코드 (Engine code)	최대출력 /회전수 (Rated Power/rpm)	배기량 (Displacement) (cc)	철도차량 수입사 (대표자성명) Vehicle importer (Representative)	철도차량 명칭 (제작사) Name of vehicle (Manufacturer)	철도차량 형식 (Type of vehicle)	비고 (Note)

인증번호 :				
개별차량용 철도차량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서				
수입자	업체명			성명(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인증사항	원동기형식 /원동기코드	원동기제작사(국)	철도차량 명칭 (형식)	철도차량 제작사(국)
	원동기 배기량	최대출력/회전수	사용연료	차대번호 (원동기일련번호)
				-차대번호: -원동기일련번호:
배출가스 방지장치 부착내용				
※제원관리번호 (형식승인번호)				
인증조건				
1. 이 인증서는 ※란의 제원관리번호(형식승인번호)를 가진 개별차량용 철도차량에만 유효합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에 따른 결함시정에 대비하여 자동차 구입에 대한 기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3. 자동차배출가스 관련부품이 제 성능을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정비지침 제공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4. 「대기환경보전법」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인증합니다.				
년 월 일				
국립 환경 과학원장			직인	

인증생략번호 :				
철도차량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생략서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원동기 제원	원동기형식 (원동기코드)		원동기제작사(국)	
	철도차량 명칭 (형식)		철도차량 제작사 (국)	
	원동기배기량		최대출력 /회전수	
	사용연료		제원관리번호 (형식승인번호)	
	차대번호		원동기일련번호	
대표원동기 인증내역	인증번호 (인증일자)		철도차량 제작사 (국)	
	철도차량 명칭 (형식)		원동기형식 (원동기 코드)	
	원동기배기량		최대출력 /회전수	
	사용연료		제원관리번호 (형식승인번호)	
	차대번호		원동기일련번호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생략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소유자 성명			전화번호(팩스번호)	
	소유자 주소				
신청 대상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번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모델명	
	차대번호			장치 부착(개조) 연월일	
반납 사유	[]폐차 또는 폐기 []수출 []사고·재해·도난 []천연가스버스 대차 []저공해차 대차 []기타 ()				
반납 내용	장치 반납	[]매연여과장치(DPF, pDPF)			
		[]산화촉매장치(DOC)			
		[]저공해엔진 촉매			
	[]현물 반납		[]금전 납부		
장치 또는 부품	예금주				
반납비용 지원	은행명			계좌번호	

이
의
의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고, 재해 또는 도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계좌번호가 표시된 소유자 명의의 통장 사본 1부(장치 또는 부품 반납비용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2. 반납확인증명서(반납비용 지급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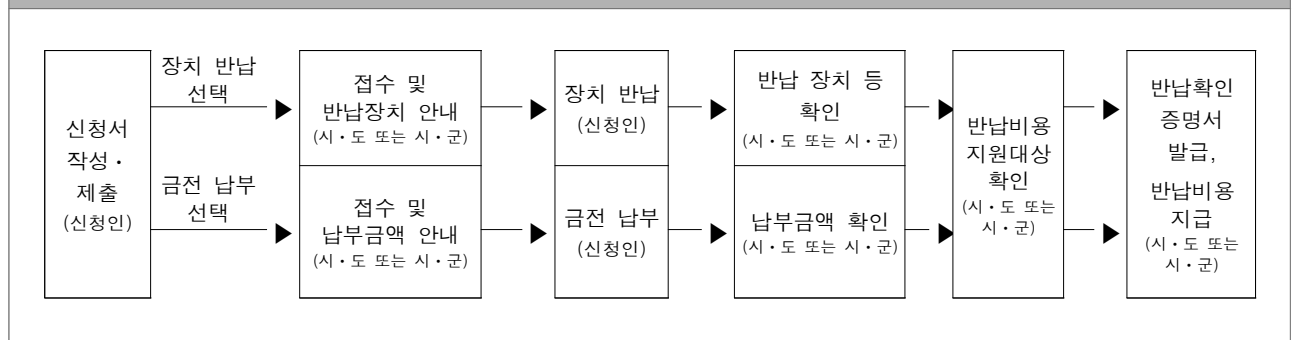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반납비용 지원 금액은 예산 편성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 지원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자가방지시설의 설계·시공) ① (생략)	제31조(자가방지시설의 설계·시공) (현행 제1항과 같음)
제66조(인증서의 발급 및 확인)	제66조(인증서의 발급 및 확인)
① 환경부장관이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에게 <u>별지 제31호서식 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u> 의 배출가스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자동차를 자동차제작자 외의 자로부터 수입하여 인증을 받은 자에게는 <u>별지 제32호서식 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u> 의 개별차량용 배출가스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 ----- ----- ----- <u>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1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1호의3서식</u> -----. ----- ----- ----- <u>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2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2호의3서식</u> -----. -----.
②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생략을 받은 자에게는 <u>별지 제33호서식 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u> 의 배출가스 인증생략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 ----- ----- <u>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3호의3서식</u> ----- -----.
③ 다음 각 호의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증서 또는 인증생	③ ----- ----- -----

략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신설>

제69조(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검사
등의 비용) ① (생략)

제79조의15(저공해자동차의 구매
·임차 비율) ① 법 제58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
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
00퍼센트를 말한다.

② 법 제58조의5제1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구매·임차하
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율
중 80퍼센트 이상을 제1종 저공
해자동차로 구매·임차해야 한
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율
의 적용방법 등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실적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한다.

제81조의2(공회전제한장치 성능
인증의 신청·시험·기준 및 방
법 등) ① 법 제60조제1항 본문

-----.

1. ~ 4. (현행과 같음)

5. 「철도안전법」 제26조에 따
른 철도차량의 형식승인 신청

제69조(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검사
등의 비용) (현행 제1항과 같음)

제79조의15(저공해자동차의 구매
·임차 비율) ① -----

-----이란 제1
종 저공해자동차 -----
-----.

<삭제>

② 제1항-----

-----.

제81조의2(공회전제한장치 성능
인증의 신청·시험·기준 및 방
법 등) ① -----

에 따라 공회전제한장치의 인증
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
의7서식의 공회전제한장치 성
능인증 시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
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5.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
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의7서
식의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
시험 변경신청서에 변경과 관련
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
해야 한다.

1. · 2. (생 략)

③ · ④ (생 략)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60
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공
회전제한장치에 대하여는 별지
제36호의8서식의 공회전제한장
치 성능인증서를 내줘야 한다.

제82조(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
증의 신청 · 시험 · 기준 및 방법
등) ① ~ ③ (생 략)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시험은

----- 별지 제36호의
8서식-----

-----.

1. ~ 5. (현행과 같음)

② -----

----- 별지 제36호의8서식

-----.

1. · 2.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

----- 별지
제36호의9서식-----
-----.

제82조(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
증의 신청 · 시험 · 기준 및 방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실시한다. <단서 신설>

⑤ ~ ⑦ (생략)

제104조의2(전문정비 기술인력의 교육) ① 전문정비사업자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배출가스 전문정비 기술인력(이하 “전문정비 기술인력”이라 한다)에게 환경부장관 또는 전문정비 기술인력에 관한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전문정비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신규교육: 전문정비 기술인력으로 채용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1회(정비·점검 분야의 기술인력 및 정밀검사 지역에서 확인검사 분야 기술인력만 해당한다)

2. (생략)

② ~ ⑥ (생략)

----. 다만, 환경부장관은 시설, 장비, 인력 등 인증시험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기관에게 인증시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2(전문정비 기술인력의 교육) ① -----

-----.

1. -----
----- 6개월 -----

2.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20조의3(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절차) ① <u>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3호 서식의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시료 및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u> 1. ~ 4. (생략) <u><신 설></u> ②·③ (생략) 제124조의5(<u>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환 및 이월 등</u>) 법 제76조의5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u>각각</u> 3년을 말한다.	제120조의3(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절차) ① <u>법 제74조제2항 또는 제4항</u>----- -----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검사합격증 사본(법 제74조 제4항에 따른 재검사만 해당한다)</u>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4조의5(<u>자동차 온실가스 차이분 이월 기간 및 초과분 상환기간 등</u>) ----- ----- <u>전단은 5년을</u> <u>말하며, 후단은</u> ----- -----.
---	---